

대법원 2026. 10.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24다226825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다) 파기환송(일부)

[원고로부터 변압기를 납품받던 피고가 이후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변압기를 제조·납품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모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입반조항이다.

(카)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

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변압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프랑스 회사이고, 피고는 변압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인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동력분산식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해당 변압기를 납품하였음. 그런데 피고는 이후 원고를 배제한 채 다른 회사들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계약을 수주하여 동력분산식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직접 제조·납품하였음(이하 피고의 각 납품행위를 ‘제1 납품행위’ 내지 ‘제4 납품행위’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납품행위’라 함). 원고는 이 사건 납품행위가 주위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 부정경쟁행위, 예비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해당 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제1 납품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제2, 3 납품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나, 제4 납품행위는 ‘성과 등’에 대한 보호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위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제1, 2, 3 납품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제4 납품행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성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보호기간을 제한할 수 있거나 제4 납품행위 당시 이미 그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4다30296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에 대한 반복적인 한정 의견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품설명서에서 회계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한정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 권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구 자본시장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8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등 참조).

☞ 사모펀드의 판매회사로서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수익증권 및 제반 권리를 양수한 원고가, 자산운용회사인 피고는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해당 역외펀드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투자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내지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역외펀드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피고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6다204200 근저당권일부이전청구 (다) 파기환송

[저당권부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저당권부 채권자에게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고, 그에 근거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러한 대위변제자의 부기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고, 그에 근거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위변제자의 부기등기 청구권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 저당권에 근거하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등기 상태의 시정을 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알루미늄 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던 갑은 1999. 10. 28. 알루미늄 공급처인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1999. 11. 3. 알루미늄 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피고가 알루미늄 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2002년 4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한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고, 원고가 발행한 액면금 3억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이 2002. 12. 27. 원고 명의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결제되었음.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결제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대위변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교부 등을 통해 2002. 12. 27. 갑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3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이는 상사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채무자인 갑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 중 3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면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피고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고, 이때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형 사

2025도1731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구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각 호에서 말하는 ‘매도’에 해당하기 위하여 매매체결이 필요한지가 문제된 사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각 호에서 말하는 ‘매도’란 상장증권에 대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가 합치되어 매매체결이 된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투자자가 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 등을 거쳐 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통상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주문’ 단계(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5항 참조), 거래소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호가’ 단계(같은 조 제4항 참조),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와 합치되어 매매거래가 성립하는 ‘매매체결’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 자본시장법 제180조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제1항 제1호)’를 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제1항 제2호)(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를 하는 것을 ‘공매도’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0호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매도’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구 자본시장법의 공매도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각 호에서 말하는 ‘매도’란 상장증권에 대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와 합치되어 매매체결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래소 회원이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0호는 ‘공매도를 한 자’를 처벌할 뿐 미수범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단지 ‘공매도의 위탁 또는 수탁’ 행위를 ‘공매도’ 행위와 구분하여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을 뿐이다.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상 매도호가와 제출되었더라도 매수호가와 합치되어 매매체결이 되기 전까지는 거래소 회원이 언제든지 그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3조 참조). 그럼에도 매매체결 전의 호가 행위만으로 이를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수 행위를 기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

2) 구 자본시장법은 ‘매도’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매도를 ‘값을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매도’는 계약에 따른 처분행위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2420 판결 등 참조), 이는 기본적으로 매매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구 자본시장법은 제180조의4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고, 제429조의3에서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매도’와 ‘공매도 주문’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4) 구 자본시장법이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결제불이행을 야기할 위험을 방지하고, 나아가 공매도로 인한 추가하락의 위험이나 시세조종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형벌법규상 ‘매도’의 의미를 확장하여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2. 25. 대통령령 제35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8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의 방법에 관하여 정하면서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로 나누고 있기는 하나, 이는 매도 주체별로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와 관련하여 거쳐야 할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것이지 공매도의 의미나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의 기수 시점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구 금융투자업규정(2025. 3. 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한다) 제6-30조에서 ‘이 조에서 공매도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영 제208조의2 제3항에 따른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와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의 값을 가진 순보유잔고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청약 또는 주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조에서’라는 문언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이는 그 자체로도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무엇보다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는 형벌법규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규는 법률이나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런데 구 자본시장법 제180조는 ‘공매도’를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와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라고 할 뿐이고 그 구체적 요건이나 해석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하위법령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나 금융위원회 고시에 불과한 구 금융투자업규정을 근거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공매도의 개념을 확장할 수는 없다.

6) 거래소 회원이 아닌 투자자의 경우에는 거래소 회원에게 주문을 내는 행위만으로도 ‘공매도의 위탁’에 해당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과 균형을, 거래소 회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직접 호가를 제출한 경우에도 매매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처벌의 필요성은 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고,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피고인(H 은행)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거나 차입하지 아니한 주식에 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이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을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주식에 관한 매도주문을 하여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6도741 준강제추행 (나) 상고기각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취업제한명령을 병과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중 상향의 금지’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중 상향의 금지’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반여부의 판단 기준◇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제1항에서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는 추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중 상향의 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이 선고되었는지 여부는 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41조 각 호에서 정한 형의 종류의 순서로 판단하여야 하고,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과 동일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을 새로 부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명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됨.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함

☞ 원심은, 제1심이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 이상 보안처분인 취업제한명령을 병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6도1865 무고 (마) 파기환송

[피고인이 전 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

◇1.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관한 변수를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쉽게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강간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

를 쉽사리 무고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참조).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등 참조). 또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현행 법제도하에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져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에도 상대방의 행위가 강간죄 등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법적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강간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이를 쉽사리 무고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신고사실 중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과 피고소인은 2021. 1.경부터 2021. 3. 말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피고소인은 혼인하여 자녀 두 명을 두었다가 이혼한 사실이 있으나 교제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1. 5. 7. 피고소인의 집에 혼자 찾아갔다가 가사도우미로부터 ‘피고소인이 그곳에서 배우자,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 피고인은 피고소인이 관전클럽에서 피고인에게 알 수 없는 물체를 탄 술을 마시게 하여 피고인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린 후 간음하는 방법으로 3회 강간하고 피고인의 가슴·성기가 촬영된 사진·동영상을 반포하였다는 강간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의 범죄사실(이하 ‘강간 고소사실’)로 2021. 12.경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이 위 고소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검사가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의 고소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간 피해 시점 이후에도 피고소인에게 항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피고인이 복용 중이던 약물 외의 다른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강간 고소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간 고소사실에 대한 불송치 결정 자체를 무고에 대한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과 혼인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교제 당시에는 강간 고소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교제 당시 강간 고소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거나 연인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 강간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음. 또한 피고인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강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고소를 하였고 고소 당시 피고인의 모발 등에 대한 약물 감정을 먼저 요청하는 등 강간 고소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무고의 고의로 허위의 강간 고소사실을 가공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피고소인과 함께 관전클럽에 가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고 피고소인과 마지막으로 관전클럽을 다녀온 직후에는 피고소인이 관전클럽에서 한 행동과 그로 인하여 처하게 된 피고인의 상황에 대한 심한 절망, 거부감, 충격 등을 드러내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그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등 관전클럽에서 피고인

과 피고소인 사이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피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소인이 알 수 없는 물체를 피고인이 마시는 술에 타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관전클럽에서 이루어진 성행위가 형법상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소극적 증명이 피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간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6도703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가) 파기환송

[영업비밀의 국외누설 사건에서 수수된 돈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해당 여부 및 추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관하여, 보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 하는 일련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 행위 등에 불과한 경우 지급된 돈이나 물품 등 전부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보다 앞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나 물품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당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내 기업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룩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외에도 그와 같은 범죄행위로 형성된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함으로써 범죄행위의 유인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근원적으로 박탈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의 보수’라 함은 피고인이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나 물품 등을 의미하고, 이때 보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그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 하는 일련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 행위일 뿐이거나, 그 범죄행위가 없었더라면 별도로 대

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행위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그 지급된 돈이나 물품 등 전부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수수된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지 여부는 그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에 따를 것이고, 그 지급이 시기적으로 범죄행위보다 앞서 이루어졌거나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므로, 영업비밀의 누설, 유출 등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이나 물품 등을 수수한 사정이 엿보이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범죄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면, 이를 해당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화학제품 제조회사 기술팀장인 피고인 1은 관련 업체인 피고인 3을 운영하는 피고인 2로부터 위 제조회사의 영업비밀인 특정 화학제품의 생산기술(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에 유출할 것을 제의받았음. 피고인 1은 2023. 10.경부터 위 제조회사로부터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를 반출하면서, 그 자료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2가 소개한 중국 기업 A와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하여 회의를 하거나 질문,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 자료제공 등을 하였음. 그 과정에서 피고인 2는 2023. 10. 31. 자신이 운영하는 미국 법인인 피고인 3을 통하여 중국기업 A와 이 사건 영업비밀의 이전에 관하여 총 용역대금을 미화 600만 달러로 하는 기술이전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법인은 2024. 1. 17.까지 중국기업 A로부터 용역대금 일부인 미화 약 152만 달러를 지급받았음. 한편, 피고인 1은 2023. 10.경부터 2024. 2. 말경까지 피고인 2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약 4,500만 원을 지급받았음

☞ 검사는, 피고인 1이 2024. 1. 12. 위 제조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를 계속 보유한 사실(제1 범죄),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2024. 1. 30. 및 같은 해 2. 28. 그 영업비밀 자료 일부를 피고인 2에게 각 누설하고(제2 범죄), 피고인 2가 이를 각 취득한 사실(제3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1을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을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으로, 피고인 2를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을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으로 각 기소하였음

☞ 제1심은 피고인 1, 2에 대하여 유죄(피고인 1에 대한 일부 영업비밀 자료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①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2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약 4,500만 원에 대해, ② 피고인 2에 대하여 중국기업 A로부터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미화 약 152만 달러에 대해, 각 추징을 명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 1, 2에 대하여 유죄(피고인 1에 대한 일부 영업비밀 자료에 관한 공소 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①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지급받은 약 4,500만 원은, 그 대부분이 제2 범죄 이전에 지급된 것이고, 위 돈 일부에 범죄행위와의 대가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② 피고인 2가 중국기업 A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미화 약 152만 달러는, 기술이전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이고, 피고인 2의 제3 범죄 이전에 지급된 것이며, 위 돈 일부에 범죄행위와의 대가성이 있더라도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 2에 대하여 모두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①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지급받은 약 4,500만 원은, 그 전부가 피고인 1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보수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고, ② 피고인 2가 중국기업 A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미화 약 152만 달러는, 피고인 2에 대하여 기소된 제3 범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나 그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함

특 별

2023두37193 임명취소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

[휴직한 사립고등학교 교원을 국회의원 보좌관에 임명한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한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휴직한 사립학교 교원을 국회의원 보좌관에 임명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헌법과 관계 법령의 내용, 국회의원 보좌관의 업무 특성,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사립학교 교원을 그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휴직 상태로 정치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에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겸유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고 선언함으로써 헌법적 차원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 국가권력

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참조).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 당파적 편향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또는 간섭당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간의 내면적 가치증진에 관련되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당파적인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참조).

2) 헌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로 정치운동을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들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 또는 정치적 행위를 근무 시간 내에 또는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는 교원의 정치운동 또는 정치적 행위가 근무시간 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유지되기 어렵고, 직무 내의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제만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3)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정치인’은 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 정치인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원으로 직제상으로는 국회사무처의 소속이지만 개별 국회의원실에 배치되어 해당 국회의원의 지시·감독 하에 해당 국회의원이 부여하는 직무를 전속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중에서도 보좌관은 국회의원이 임명할 수 있는 보좌직원 중 가장 높은 일반직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총괄한다. 이에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국가공무원임에도 정치운동의 금지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

따라서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나,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면직사유로 정한 정치운동에 해당하는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하 ‘초·중등학교 교원’이라 한다)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부분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재판관 6인이 의견을 같이한 위헌의 이유는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위 조항 부분 중 '정당'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그중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활동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가치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자로서의 특별한 처신이 요구되고,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기본권 또는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으로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한 위헌 결정으로 초·중등학교 교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상 동질성을 가진다는 교육의 본질에 따른 교육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참조).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청이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비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 사립고등학교 교원인 원고는 그 직을 고용휴직한 상태로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음. 이후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교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보좌직원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명취소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임명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사립고등학교 교원이 그 직을 고용휴직한 상태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임명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사립고등학교 교원이 그 직을 고용휴직한 상태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임명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